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-193호

#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」제2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공고합니다.

2025. 1. 20.

##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

1. 융자지원 규모: 7억원

#### 2. 융자대상 및 조건

- 융자대상 : 제주특별자치도 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
- O 융자한도

융자종류	대상	융자한도액	
시설개선 자금	식품제조·가공업소	7천만원	
	즉석판매제조·가공업소	7천만원	
	식품접객업소 (단란주점영업·유흥주점영업의 경우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에 한정)	3천만원	
	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	1천만원	
육성(운전) 자금	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	3천만원	
	위생등급 지정업소	3천만원	
	향토음식점	3천만원	

O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: 연 1%, 4년(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)

- O 사용범위
- 시설개선자금 : 영업장 시설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·설비 등 구입설치
- 운영(육성)자금 : 영업장 시설개선 및 식재료 구입 등 필요경비
  - ※ 필요경비란 인건비, 융자금 상환금을 제외한 경비에 한함

#### 3. 제외대상

- O 휴업·폐업 중인 업소
- O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
- O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
-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
- O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
- O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
  - ※ 도내 타 기금(농어촌기금, 관광진흥기금, 중소기업육성자금 등)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 불가

#### 4. 융자 취급은행 : 농협 중앙회, 제주은행 각 영업점

#### 5. 융자신청 :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행정시 위생관리과에 신청

- 신청기간 : 연중(평일 09:00 ~ 18:00)
- O 구비서류

구분	목록
공통	신분증(본인확인용) [서식1] 융자금신청서 [서식2] 사업계획서 [서식3]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[서식4] 사업이행확약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
시설개선자금	견적서
육성(운전)자금	지정서(우수/모범업소, 위생등급 지정업소, 향토음식점)

- O 신청절차
  -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(농협, 제주은행) → 융자신청(행정시 위생관리과) →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→ 지원결정 통보

### 6. 기타문의

-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위생과(☎ 710-2943)
- 제주시 위생관리과(☎ 728-1452)
- 서귀포시 위생관리과(☎ 760-2422)
  - ※ 영업장 소재지가 제주시인 경우,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방문 서귀포시인 경우,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방문

							처리기한									
용자금신청서											5일					
			ги ж	E자성	너미				۸H	1 =	위	οl				
	<del>-</del> 1	<b>-</b> 1								년 월 일						
신	청	자								화 번 호						
			주소	(소자	내지)				사업	업자등록번호 						
사위	걸체구	구모	영업	장총	면적			m²	자	산	총	액			천원	
업	종	명				허가일	자					허	가번호			
자	금 융	자		실소	<b>노요</b> 듣	금액		융	자신	신청	금	객	н	•		율
신	청 내 역 백만원 백만원								%							
   	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」 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(□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, □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, 위 생등급 지정업소 및 향토음식점 등 육성(운전)자금) 융자를 신청합니 다.															
						년	<u>-</u>	월		일						
신청자 (인							인)									
귀하																
									지정	은행 /	사전	확	·인			
(첨부서류) 1. 사업계획서 1부 2. 사업자 등록증 1부								<u></u>	은행	명						
							대	출0:	부	가능	<del>-</del>	/	불가			
						호	탁인	자			(	인)				

### [서식 2-1] 시설개선자금

사 업 계 획 서							
	^	사업 /	케 왹 서				
사 구나 가	성 명		생 년 월 일	<u> </u>			
신 청 자	업 소 명		소 재 조	I			
시설현황 및	영업장총면적		m² (	평)			
<i>ᄎ</i> 사업계획	개선내용						
실소요예산액		자부담		융자금액			
공사착공일			공사완공일				
	시설개선부문	규격	수량	소요금액	비	고	
시설							
개 선 내 용							
	실소요금액						

위와 같이 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」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개선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작성자 : (인)

### [서식 2-2] 육성자금

사 업 계 획 서								
41 <del>7</del> 1 TI	성 명		생 년 월 일	<u> </u>				
신 청 자	업 소 명		소 재 지					
시설현황 및	영업장총면적		m² (	평)				
보 사업계획	개선내용							
실소요예산액		자부담		융자금액				
운영계획								

위와 같이 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」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시설 운영계획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작성자 : (인)

###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

- □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관한 일반 사항
  - 수집 및 이용 목적 :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에 따른 신청자 개인 정보 식별 및 정보제공 등
  - 수집 항목 : 성명, 주소(소재지), 연락처, 사업자등록번호, 허가번호
  - 보유 및 이용기간 : 추천서 및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보존기간 종료일까지
  - ※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,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열람, 정정,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시 즉시 삭제함

상기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,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상기 본인은 위의 사항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였으며,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업 소 명 :

대 표 자 : (인 또는 서명)

귀하

## 사 업 이 행 확 약 서

「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조례」제5조에 따라 영업장 위생관리 시설 개선자금 및 운영자금 등 필요한 자금을 융자 받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.

- 1. 융자금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시설개선을 하겠으며, 융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겠습니다. 단,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- 2. 융자금을 받은 후 본 업소를 폐업 ·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- 3.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한 경우(다만,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를 제외한다)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- 4. 모범음식점이나 향토음식점 또는 우수업소 등 운영자금을 융자 받은 후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- 5.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겠습니다.
- 6. 사업수행상 제반사항에 대하여 귀청의 지시 및 지도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.

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청의 어떠한 행정조치나 당해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회수(조기상환)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귀하